

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지역 유행/인원 제한	권역 유행/모임 금지	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시·군·구, 시·도, 중대본	시·군·구, 시도, 중대본	시·군·구, 시도, 중대본	중대본
기준	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 ▶ 전국 : 500명 미만 ▶ 수도권 : 250명 미만	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 : 500명 이상 ▶ 수도권 : 250명 이상	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 : 1,000명 이상 ▶ 수도권 : 500명 이상	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 : 2,000명 이상 ▶ 수도권 : 1,000명 이상
모임	방역수칙 준수	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※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행사	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100인 이상 행사 금지	50인 이상 행사 금지	행사 금지
집회	500인 이상 집회 금지	100인 이상 집회 금지	50인 이상 집회 금지	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-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
-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

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

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

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 유흥시설	시설면적 6㎡ 당 1명 (클럽, 나이트 8㎡당 1명)	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 (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/2~3단계)		
	운영시간 제한X	24시 이후 운영제한	22시 이후 운영제한	22시 이후 운영제한 -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는 집합금지
	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(1~4단계)			
 콜라텍 무도장	시설면적 8㎡당 1명	시설면적 10㎡당 1명(2~4단계)		
	운영시간 제한X	24시 이후 운영제한	22시 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	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			
 홀덤편 게임장	시설면적 6㎡당 1명	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운영시간 제한X	24시 이후 운영제한	22시 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
2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 식당·카페	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 시설) (1~4단계)			
	운영시간 제한X	24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	22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(3~4단계)	
 노래(코인) 연습장	시설면적 6㎡당 1명	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운영시간 제한X	24시 이후 운영제한	22시 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	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			
 목욕장업	시설면적 6㎡당 1명	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운영시간 제한X	운영시간 제한X	22시 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 실내 체육시설	시설면적 6㎡당 1명	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운영시간 제한X	운영시간 제한X	운영시간 제한X -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	22시 이후 운영제한
		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제한(권고) 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	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	
			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	
		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 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		
		GX류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샤워실 운영금지		
		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		
		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·안내, 샤워실 운영금지		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	시설면적 6㎡당 1명	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		
	운영시간 제한X	운영시간 제한X	22시 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	

·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, 2그룹, 3그룹으로 나누고,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